

[건설신기술 적용 시 혜택]

신기술 활용지원

[신기술 우선적용 권고]

- ▶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·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,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·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.(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4항)
- ▶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함(법 제14조제5항)
- ▶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한 기존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.(영 제34조제2항)

[담당자 면책]

- ▶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(법 제14조제6항)

[설계반영 의무]

- ▶발주청은 지정·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(영 제34조 제3항)
- ▶설계보고서에는 영 제42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, 경제성, 안전성, 유지관리성,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해당 건설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(규칙 제40조 제1항제5호)

[시험시공의 권고]

- ▶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·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.(법 제14조 제4항)
- ▶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(영 제36조제1항)

[기술사용료 청구]

기술개발자(법인포함)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(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2항)

[기술사용협약 체결]

발주기관이 건설공사에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6호, 제5조의2 제3항)

기술개발보상제도

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·공법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,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.

<개정'08.12.31 > 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)

가점부여

구 분	내 용
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	건설신기술 개발실적항목에서 2점, 활용실적 항목에서 3점 배점
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	건설신기술 사용실적(건수,금액)에 따라 1점/건 배점
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	“기술능력”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 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점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 ※신기술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
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	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개발건수 및 활용실적에 각 3점 배점
건설사업관리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	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개발실적 항목에서 3점, 활용실적 항목에서 1점
종합 및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방법	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한다. 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,2) ※시공능력평가액 : 공사실적평가액+경영평가액+기술능력평가액±신인도평가액
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	“당해용역수행능력” 평가 시 최대 1점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	제75조 제11항 및 별지 제68호 서식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±5점 가감점(예산절감,신기술,벌점,재해발생 등)
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	최근 2년 이내에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기업이 R&D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%이내 가점 부여

수의계약

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·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)

자금지원

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(영 제34조 제5항)

1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또는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
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
3. 「기술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
4.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

신기술 인증표시(마크) 사용

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·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,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.(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)

